

의안번호	제946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김종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4월 11일

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김종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4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4월 11일

발의자 : 김종필, 이상식, 김현문,
박지현, 이동우, 이상정,
안치영 의원

1. 제안이유

- 생활인구의 유입 및 확대에 대한 사항과 생활인구 등록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·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생활인구 및 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정의(안 제2조)
- 충청북도 생활도민 선정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충청북도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(안 제7조)

3. 조례안 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비용추계 : 붙임
- 협의 :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
- 조례안 예고 : 예고 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생활인구”란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충청북도 생활도민”이란 충청북도 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선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도지사는 생활도민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선정 등)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해 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방문·체류하려는 사람을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에 따른 신청 당시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.

- ②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.

1. 별지 서식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도민증 발급 신청서
2.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충청북도 생활도민을 선정한다.
-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활도민증을 발급한다.

제5조(충청북도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도 및 관할 시·군에서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
2. 충청북도정 홍보 및 귀농·귀촌, 축제, 관광, 특산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
3. 숙박·레저·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
4.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생활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충청북도 생활도민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활도민증을 제시해야 한다.

제6조(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선정 취소)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도민 제도의 효율적인

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도지사는 생활도민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, 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6. 9.>

1. “인구감소지역”이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2. “생활인구”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
 - 나. 통근, 통학, 관광, 휴양, 업무,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 - 다.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내 안역을 말하며, 이하 시·도와 시·군·구를 합쳐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.

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,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·협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생활인구의 확대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,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우리도 생활인구 확대 및 생활도민제도 도입·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안으로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 및 생활도민증 신청·처리 시스템 구축과 제도 홍보를 위한 비용 수반이 예상되나,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소요 예산규모 예측이 불가하여 제외함